

부속서 Ⅲ
제12조에 규정된 리히텐슈타인의 유보

리히텐슈타인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현행법령	1969년 12월 10일의 Gewerbegesetz(상법에 관한 법), LR(리히텐슈타인 법의 체계적 집합) 930.1, 제2항에서 언급된 관련 법, 그 법의 단락 1, 그리고 관련된 국회 또는 정부 결정
유보내용	법인에 의한 상업적 주재의 설립(지점을 포함)은 국가경제의 이유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되지 않아야 하는 요구조건을 필요로 한다. (국내와 외국 자본의 균형 잡힌 비율, 거주자의 인구수 대비 외국인의 균형 잡힌 비율, 거주자 인구수에 비해 경제 내 적당한 고용비율, 균형 있는 지리적 상황, 분야 간과 분야 내에서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목적 또는 동기	국가의 특정한 지리적 상황, 제한된 자원과 작은 인력시장을 고려한,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리히텐슈타인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현행법령	1969년 12월 10일의 Gewerbegesetz(상법에 관한 법), LR 930-1 1926년 1월 20일의 Personen und Gesellschaftsrecht(회사법), LR 216.0
유보내용	개인에 의한 상업적 주재의 설립은 특정 기간 동안의 이전 거주요건과 리히텐슈타인 내 영구적 주소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 법인(지점 포함)에 의한 상업적 주재의 설립은 다음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적어도 한명의 경영진이 리히텐슈타인에서 특정 기간 동안 거주했어야 하며 영구거주를 하여야 한다. (법인을 경영하고 대표하도록 승인된) 관리자들의 과반수는 리히텐슈타인에 거주해야 하며 리히텐슈타인 시민이거나 혹은 특정기간 동안의 리히텐슈타인 내에 거주했어야 한다. 무한 그리고 유한 파트너쉽은 유한책임을 가진 기업(법인)과 동일한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회원의 과반수는 리히텐슈타인 시민이거나 특정기간 동안 리히텐슈타인 내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리히텐슈타인 회사법은 합자회사가 정관에서 등록된 지분의 양도를 사전에 제한하거나 저지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목적 또는 동기	사법 소송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리히텐슈타인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현행법령	1992년 5월 2일 유럽경제지역(EEA) 협정
유보내용	EEA 회원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고 등록 사무실이 있으며, 중앙 행정 또는 주된 사업장이 EEA 회원국 내에 있는 경우 제3국의 지사에게 부여되는 대우는 제3국 회사에 의하여 EEA 회원국내에 설립된 지점이나 대리점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제3국의 지사가 EEA 회원국의 영역 내에 등록 사무실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들이 EEA 회원국 중 한 나라의 경제와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연계를 가진다고 보이지 않는 한, 덜 우호적인 대우가 부여될 수 있다.
목적 또는 동기	EEA 협정으로부터 얻는 혜택이 제3국에게 자동적으로 용인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리히텐슈타인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현행법령	1992년 12월 9일 Grundverkehrsgesetz(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법), LR 214.11
유보내용	모든 부동산의 취득은 승인을 요한다. 그러한 승인은 거주 또는 사업의 목적을 위한 실제적이고 증명된 요건이 주어졌고 특정기간 동안의 거주가 완료된 경우에만 주어진다. 비거주자는 부동산의 취득에서 제외된다.
목적 또는 동기	이용 가능한 토지의 극심한 부족, 거주 인구에 대한 부동산 접근 보호와 균형 있는 지리적 상황 유지.

리히텐슈타인

분야	전력과 에너지 분야
하위분야	-
현행법령	적용 불가능
유보내용	리히텐슈타인은 전력과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유지하거나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목적 또는 동기	에너지 정책 고려와 국가 안보

리히텐슈타인

분야	항공 운수
하위분야	항공 등록
현행법령	2002년 5월 15일 항공법과 2003년 1월 27일의 민간항공에 관한 리히텐슈타인과 스위스 간의 협정, LR 0.748.091.11
유보내용	항공기는 전적으로 리히텐슈타인 시민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리히텐슈타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의하여 소유되고 리히텐슈타인 또는 스위스에서 출발하는 여행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거나, 또는 리히텐슈타인에 기반을 두고 등록된 회사에 의해 소유되지 않는 한, 리히텐슈타인에서 등록되지 못한다.
목적 또는 동기	항공기와 그 소유주 간의 실효적인 연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리히텐슈타인

분야	항공 운수
하위분야	리히텐슈타인 항공운수업체의 소유권
현행법령	2002년 5월 15일 항공법, LR 748.0과 2003년 1월 27일 민간 항공에 관한 리히텐슈타인과 스위스 간의 협정
유보내용	사람과 물품의 상업적 수송에 대한 외국 회사의 접근은 국제 협정에 의해 지배된다. 그러한 조약의 부재 시, 외국기업은 특정 수송 항로를 운항하기 위한 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외국 기업은 특히, 리히텐슈타인 내 법적 소재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리히텐슈타인 항공 수송 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보통 회사 지분의 40%를 초과하지 못한다.
목적 또는 동기	항공 운수 정책

리히텐슈타인

분야	항공 운수
하위분야	보조 서비스
현행법령	2002년 5월 15일 항공법(리히텐슈타인 법의 체계적 집합) 748.0
유보내용	리히텐슈타인은 EU 지침 96/67을 적용한다. 공항 당국은 영구적인 제한 또는 일시적 조치에 의해 특정 서비스를 위한 공급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지침 제20조는 호혜 조항을 포함한다.
목적 또는 동기	공항 기반시설을 위한 제한된 공간 (주: 리히텐슈타인은 현재 공항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다.)